

부가가치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 영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선 용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문 병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한 근



문의사항

(044) 204-3117~20



0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	214
0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215
0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6
04.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7
05.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	218
06.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징수 관할 명확화	219
07.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	220
08.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명시	221
09.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222
1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	223
11.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24
1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225
13.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26
14.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227
15.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228
16.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229
17.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및 발급 사유 추가	231
1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232
19.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전자적 결제수단 방법 추가	233
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34
2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235
22.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237
23.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	238
2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240
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	241

주요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마련
-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 철회 가능
- 반려동물의 치료목적 일정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 포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및 면세범위 확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6개월 → 1년 이내)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8천만원 → 1억 400만원)

【관계법령】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9931호) : 2023.12.31. 공포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270호) : 2024.2.29. 공포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 2024.3.22. 공포

0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실상 폐업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채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u>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u>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좌 동)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u>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u>

0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재화의 간주공급</p> <p>○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p> <p>①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p> <p>②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p> <p>③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p>	<p><input type="checkbox"/>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p> <p>○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사용·소비</p> <p>○ (좌 동)</p>

0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음식점업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구 분	공제율
①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적용기한 : '23.12.31.까지)	9/109	①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적용기한 : '26.12.31.까지)	9/109
② 연매출액 2억원 초과	8/108	② 연매출액 2억원 초과	8/108

04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4호 신설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input type="checkbox"/>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기본 1.0%(우대 1.3%)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2026.12.31.

05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추 가> ○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산세) 20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직권등록) 2024.2.29.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06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징수 관할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징수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	<input type="checkbox"/> 징수 주체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07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포기신고 ○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절차)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8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제출 서류 규정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동의서

09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신탁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신탁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2024.2.29.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4.2.29.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

11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가. 개정취지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②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진료용역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⑤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 (좌 동) ⑤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 확대 ○ (좌 동) ○ 「정신건강복지법」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p style="font-size: small;">* 「산업안전보건법」 §165②(2) 및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출산·보육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면세하는 교육용역 ○ 다음의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u>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u>,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 범위 <input type="checkbox"/>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input type="checkbox"/> 면세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에 부수되는 토지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 개정취지

-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대상) 저술·음악·무용·배우·가수·감독·직업운동가 등 <input type="checkbox"/>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input type="checkbox"/> 면세요건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u>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u>

16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가. 개정취지

-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선번호인의 국선번호 등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및 발급 사유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신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p> <p>*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p> <p><input type="checkbox"/>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시 한국전력거래소(중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특례 사유 추가</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u>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u>* 지급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마련</p> <p>* 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② 전력거래 정산비용 ③ 전력거래 수수료 등</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 사실 확인 신청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발급사유 규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발급 및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9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전자적 결제수단 방법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요건으로서 전자적 결제수단 이용 방법 ○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시 지급하는 전자화폐로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결제수단 이용방법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부유예 적용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p> <p>*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납부</p> <p>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한정)</p> <p>② 수출비중·수출액 요건</p> <p>-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p> <p>-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p> <p>③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p> <p>④ 최근 2년간 관세·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p> <p>-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p> <p>⑤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p>	<p><input type="checkbox"/>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p> <p>○ (좌 동)</p>

종 전	개 정
⑥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⑥ 3년간 → 2년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22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기준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천만원 → 1억 4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3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 제2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②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 대상 연구개발 시설 확대 ○ (좌 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종 전	개 정
<p>○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 연구소</p> <p>〈추 가〉</p>	<p>○ (좌 동)</p> <p>○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 해양과학기술원</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input type="checkbox"/> 연 2.9%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상향 <input type="checkbox"/> 연 2.9% →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신설

가. 개정취지

- 희귀병 환자에 대한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레자임 등 고서병환자 치료제, 로렌조 오일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등 11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희귀병 치료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 - 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